



최근 치매보험시장의 이슈와 과제

정성희 연구위원, 문혜정 연구원

우리나라 노인 치매유병률은 2018년 10.2%로 매년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치매에 대한 사회적 비용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최근 경증치매로 보장을 확대한 치매보험의 판매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경증치매 보장에 대해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및 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이에 금융감독원은 치매보험 가입 시 중복가입 확인을 당부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도 향후 점검할 계획을 발표함. 치매보험은 가입 후 실제 보장받는 시점까지는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상품이므로 보험회사들의 단기적인 상품경쟁은 지양해야 할 점으로 평가됨. 특히, 경증치매보장과 관련하여 제기된 우려들을 감안해 볼 때, 경증치매의 보장금액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보험약관상 민원이나 분쟁 요소는 없는지 등에 대한 보험업계의 면밀한 검토와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

■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치매유병률¹⁾은 2018년 10.2%에서 2065년에는 18%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그림 1) 참조

- 노인 치매환자는 2018년 75만 명에서 2065년 328만 명으로 매년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동일기간의 노인인구 증가율(1.9%)보다 1.6배 높은 수치임
 - 치매 중증도별²⁾ 유병률은 경증치매³⁾가 6.4%로 전체 치매환자 중 67%를 차지함
-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관리비용은 2017년 13조 6천억 원으로 GDP의 약 0.8%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⁴⁾되고 있으며, 연간 총 진료비는 8천1백억 원으로 이는 5대 만성질환⁵⁾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사됨⁶⁾

1)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환자 수

2) 치매의 중증도는 치매 관련 전문가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를 통해 산정되는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점수로 분류할 수 있는데, CDR 점수는 0, 0.5(최경도), 1(경도), 2(중증도), 3, 4, 5(3 이상 중증)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도가 심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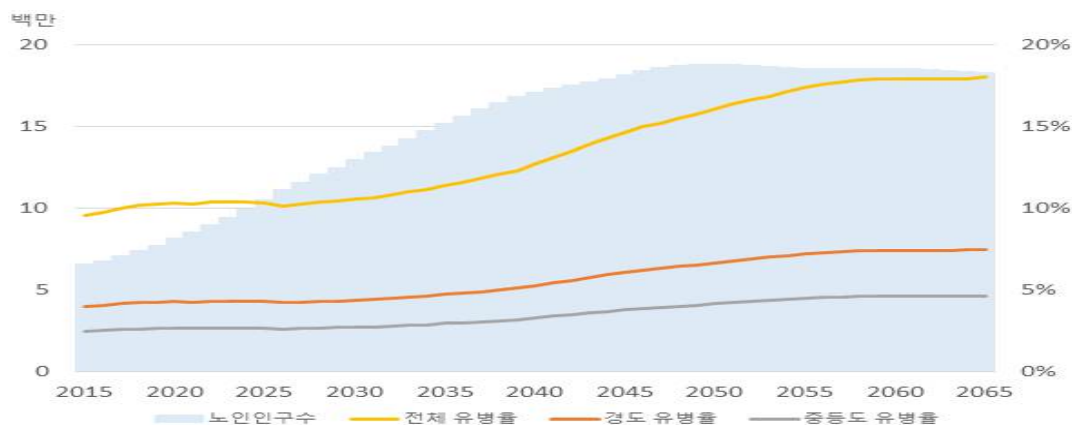
3) 일반적으로 CDR 점수가 1, 2에 해당되는 치매를 의미함

4) 중앙치매센터(2018),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7”

5)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당뇨, 고혈압, 관절염

6) 중앙치매센터(2017), “2016년 전국 치매역학 조사”

〈그림 1〉 노인인구 및 치매 중증도별 유병률 전망



자료: 통계청; 중앙치매센터

■ 최근 치매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면서, 보험회사들이 기존의 중증치매 중심에서 경증치매로 보장을 확대한 치매보험을 경쟁적으로 출시하면서 단기간에 판매가 크게 증가함(그림 2, 3) 참조

- 치매보험 도입 초기에는 주로 중증치매상태(CDR 3점 이상)를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였으나, 2017년 하반기부터 경증치매상태(CDR 1점 또는 2점) 보장을 포함하는 상품 판매가 확대되는 추세임
 - 최근 보험회사들이 간편치매보험을 출시하면서 시장경쟁이 격화되는 양상임
- 전체 치매보험시장은 2018년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약 233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3.5배로 크게 증가함
 - 특히 손해보험회사의 판매실적은 2018년 약 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배 증가함

〈그림 2〉 치매보험 판매건수 추이

(단위: 건)



자료: 보험회사

〈그림 3〉 치매보험 초회보험료 추이

(단위: 원)



자료: 보험회사

■ 단기간 내 치매보험의 판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특히 경증치매 보장과 관련하여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보험금 지급 시 민원 및 분쟁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경증치매 중 경도(CDR 1점)의 경우 증상에 비해 보장금액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고, 보험회사 간 중복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경증치매에 대해 최대 3천만 원의 보장금액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치매는 8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발병률이 급증하는 질환으로 20~30년 후 주요 가입 연령층(40~60세)의 보험금 청구가 증가할 경우, 약관 모호 및 불완전판매 등으로 치매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및 분쟁 유발 가능성이 큼
 - 경증치매보장 약관상 “CDR 척도뿐만 아니라 뇌영상검사 등을 기초로 한 진단이 필요”하여 뇌영상검사 등을 기초로 한 진단의 의미에 대한 해석⁷⁾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판매자의 부실 설명 등으로 가입자가 치매보험의 보장내용 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민원⁸⁾을 제기할 우려도 존재함

〈표 1〉 치매 중증도별 증상

중증도		증상
최경도 (CDR 0.5점)		- 음식 조리 후 불 끄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빈번함 - 물건을 보관한 장소를 잊어버림 - 미리 적어두지 않으면 중요한 약속을 잊음 - 평소 잘 알던 사람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음
경도 (CDR 1점)		- 조금 전에 했던 말을 반복하거나 물었던 것을 되물음 - 일반적인 대화에서 정확한 낱말을 구사하지 못하고 ‘그것’, ‘저것’으로 표현함 - 관심과 의욕이 없고 매사에 귀찮아 함 - 남을 의심하는 말을 많이 함 - 과거에 비해 성격이 변함
중증도 (CDR 2점)	경증 이상	- 외출 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함 - 날짜, 시간, 계절 등을 파악하지 못함 - 신문이나 잡지를 읽지만 내용 파악이 불가능함 - 익숙한 장소임에도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함 - 집안을 배회하거나 반복적인 행동을 거듭함
중증 (CDR 3점 이상)	치매 이상	- 식사, 옷 입기, 세수하기 등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함 -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됨 - 혼자서 웅얼거려서 무슨 말을 하는지 내용 파악이 불가능함 - 집안 식구들도 알아보지 못함 - 보행 장애가 심해짐 (근육이 굳어지는 파킨슨 양상이 심해지면 간질이 동반될 수 있음) - 결국 모든 기능을 상실하고 누워 있음

7) “CDR 1점 + 뇌 영상자료상 기질적 이상 없음”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대량 민원·분쟁 발생이 예상됨
 8) 단순 반복적 건망증만으로 경증치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함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치매보험 가입 시 중복가입 등 계약심사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서도 향후 점검할 계획을 발표함⁹⁾

-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치매보험에 대해 전체 보장한도가 최대 3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내부 보험계약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있음
- 보험협회에서도 치매진단 시 뇌영상검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안내자료에 이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안내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 즉, 약관상 “전산화단층촬영(CT)... 기초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뇌영상검사가 보험금 지급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의미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¹⁰⁾

■ 고령화에 따른 노인 치매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매보장의 필요성과 치매보험의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추진(2017. 9)과 발맞춰 보험업계에서는 치매보험시장이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치매보험은 노후의 치료비와 간병비 보장을 위한 상품으로, 가입 후 실제 보장받는 시점까지는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보험회사들의 단기적인 상품경쟁 과열은 지양해야 할 점으로 평가됨
- 특히, 경증치매보장과 관련하여 제기된 우려 사항들을 감안해 볼 때, 경증치매의 보장금액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보험약관상 민원이나 분쟁 요소는 없는지 등에 대한 보험업계의 면밀한 검토와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 **kiri**

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9. 3. 28), “치매보험 가입 시 경증치매 진단기준을 잘 살펴보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10) 「보험업법」 제95조(보험안내자료) 등에 따라 보험안내자료에는 보장내용 및 보험금 지급제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백하고 알기 쉽게 기재되어야 함